정 관

전 문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이를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한다.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전문 신설 2012.2.13] <개정 2017.3.24, 2020.3.20>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회사는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SK hynix Inc. (약호 SK hynix)라 표기한다. <개정 2001.3.29, 2012.3.23>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
2) 반도체소자 기타 이와 유사한 부품을 사용하여 전자운동의 특성을 응용하는 기계, 기구 및 이에 사용되는 부품과 재료 등의 제작, 조립 및 판매
3) 컴퓨터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
4) 전자 전기, 통신기계, 기구 및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임대 및 관련 서비스업
5) 기계부분품 제조업 및 금형제조업
6)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7) 전자 전기기계, 기구의 임대업
8) 특수통신(위성통신 등) 방송관련 기기 제작,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업
9) <삭제 2003.2.25>
10) 정보서비스업
11) 출판업
12) 무역업
13) <삭제 2003.2.25>
1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5) <삭제 2003.2.25>
16) <삭제 2003.2.25>
17) <삭제 2003.2.25>
18) <삭제 2003.2.25>
19) 발전업
20) 건설업
21) <삭제 2003.2.25>
22) <삭제 2003.2.25>
23) 전자관 제조업
24) <삭제 2003.2.25>
25) <삭제 2003.2.25>
26) <삭제 2003.2.25>

27) 창고업
28) 주차장업 [신설 1999.3.26]
29) <삭제 2003.2.25>
30) <삭제 2003.2.25>
31) 위성통신사업 [신설 2000.3.24]
32)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 [신설 2000.3.24]
33)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신설 2000.3.24]
34) 전기 각호와 관련되는 사업 및 투자 [신설 2003.2.25]
35)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신설 2020.3.20]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이천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13>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 //www.skhynix.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개정 2012.3.23>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는 9,000,000,000주로 한다. <개정 1999.3.26, 2001.3.29, 2001.11.12>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오만 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2.3.23>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배당 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2.3.23>

제8조의2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권이 있는 무의결권 주식(이하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3.26, 2001.3.29, 2003.2.25, 2004.3.26, 2012.3.23>
②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이 경우 우선비율은 최근 3년간의 배당률, 자금조달의 필요성,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2.3.23>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29, 2012.3.23>
④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거나 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전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29, 2012.3.23>
⑤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3.29, 2004.3.26, 2012.3.23>
⑥ <삭제 2012.3.23>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개정 2012.3.23>
⑧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존속기간을 정하며, 그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8조의4에 의하여 발행되는 상환주식의 경우 위 기간 중 상환되지 못한 때에는 그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01.3.29, 2012.3.23, 2024.3.28>

제8조의3 (전환주식)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전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과 동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3.2.25>
③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1.3.29] <개정 2012.3.23>

제8조의4 (상환주식)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② 회사가 상환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간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회사가 발행된 상환주식 중 일부만을 상환하는 경우 각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환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를 상환하고, 이 때 계산상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2.25, 2012.3.23>
③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상환시의 시가, 발행가액 또는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④ 회사는 상환주식을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⑤ <삭제 2012.3.23>

제9조 (주권의 종류)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3.22>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본 제 2호에 의한 신주 발행은 아래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

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자금조달,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여기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되, 동항 제4호의 주권상장법인,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6호 및 제17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휴법인, 전략적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라.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3.24]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3.24, 2001.3.29, 2009.3.26>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0.3.24, 2004.3.26, 2009.3.26>

1) <삭제 2009.3.26>

2) <삭제 2009.3.26>

3) <삭제 2009.3.26>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보통주식 또는 기명식종류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결의시 정한다. <개정 2000.3.24, 2001.3.29, 2012.3.23>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3.24>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28 , 2000.3.24, 2009.3.26>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개정 2017.3.24>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으로 제1항의 결의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9.9.7, 2000.3.24, 2001.3.29, 2004.3.26>

⑦ <삭제 2024.3.28>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3.24>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3 <삭제 2024.3.28>

제10조의4 <삭제 2017.3.24>

제10조의 5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상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그에 근거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삭제 2024.3.28>

[본조 신설 2006.3.28]

제10조의6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본조 신설 2024.3.28]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 사무취급장소 및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사전에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개정 2019.3.22>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3.26, 2012.3.23>

제12조 <삭제 2019.3.22>

제13조 (기준일)

① <삭제 2020.3.20>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제13조의2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의 개편, 인수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3.25]

제 3 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3.23]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8>

[전문개정 2017.3.24]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본 조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

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삭제 2024.3.28>

[전문개정 2017.3.24]

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30>

[본조 신설 2019.3.22]

제16조 (사채발행에 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9.3.22>

제 4 장 주주총회

제17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다만,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소집한다.
④ 회사는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 [신설 2026.3.25]
⑤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개정 2026.3.25>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3>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4조에서 정한 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26, 2012.2.13>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3.26, 2003.2.25, 2009.3.26>

제19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3.26>

제20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제21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3.24>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3.24>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자회사가 합하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주주는 총회일 3일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주주가 신탁의 인수 또는 기타 사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27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중 제28조에 의한 독립이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제48조에 의한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할 독립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개정 2000.3.24, 2003.2.25, 2010.3.26, 2012.2.13, 2026.3.25>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4, 2003.2.25, 2026.3.25>

③ <삭제 1999.3.26>

④ <삭제 2026.3.25>

제28조 (이사의 원수)

① 회사의 이사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독립이사 수가 이사의 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한다. <개정 2000.3.24, 2004.3.26, 2017.3.24, 2026.3.25>
② <삭제 2000.3.24>

제29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에 만료된다. <개정 2010.3.26, 2012.2.13 >
② <삭제 2020.3.20>
③ <삭제 2000.3.24>

제30조 (이사의 해임과 결원)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3.26, 2000.3.24, 2012.2.13>
② 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때
2)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사망한 때

제31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8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3.24>
② <삭제 2012.2.13>

제32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4>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신설 1999.3. 26] <개정 2026.3.25>

제33조 <삭제 2000.3.24>

제34조 (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12.2.13>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4조의2 <삭제 2000.3.24>

제35조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0.3.24>
② 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가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다만,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직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3.24, 2003.2.25>

제36조 (독립이사의 자격)
독립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독립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0.3.24, 2009.3.26, 2026.3.25>

제37조 <삭제 2000.3.24>

제38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3.26>

제39조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3.24>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 (자기 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개정2012.3.23>
③ <삭제 1999.3.26>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3.24] <개정2012.3.23>
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03.2.25] <개정 2017.3.24>

제40조 (대표이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3.24, 2003.2.25, 2010.3.26>

제41조 (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3.23>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03.2.25>
③ 제2항에 따른 의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출석한 이사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2.25>

제42조 (의안)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다만,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의사록의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4, 2017.3.24>

제44조 <삭제 1999.3.26>

제45조 (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2.25, 2010.3.26, 2012.2.13, 2026.3.25>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2.2.13>

[본조 신설 2000.3.24]

제45조의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3.2.25, 2010.3.26, 2012.2.13, 2017.3.24, 2026.3.25>

[본조 신설 2000.3.24]

제46조 (경영진의 선임과 급여)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③ <삭제 1999.3.26>

④ <삭제 1999.3.26>

⑤ <삭제 1999.3.26>

⑥ <삭제 1999.3.26>

⑦ <삭제 1999.3.26>

제47조 <삭제 2012.2.13>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48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독립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6, 2026.3.25>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6.3.25]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6.3.25]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신설 2026.3.25]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6.3.25]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인 독립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26, 2026.3.25>

[본조 신설 2000.3.24]

제48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개정 2003.2.25><개정 2019.3.22>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2.3.23>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본조 신설 2000.3.24]

제48조의3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0.3.24]

제 7 장 회 계

제49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4>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12.3.23>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신설 2012.3.23]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4>
④ 대표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

제50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2.3.23>
[본조 신설 2003.2.25]

제51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3) 기타의 법정적립금
4) 배당금
5) 임의적립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2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②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제52조의2 <삭제 2012.3.23>

제53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54조 <삭제 2022.3.30>

제54조의2 (분기배당)
① 회사는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분기배당을 금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분기배당의 구체적인 방법, 한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2024.3.28>
④ <삭제 2024.3.28>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⑥ 제53조는 분기배당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2.3.30]

제 8 장 기 타

제55조 (안전보건계획)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본조 신설 2020.3.20]

부 칙 (`98년 3월 30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의 시차임기제)
①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이사 수를 정한다.
②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1그룹에 속한 이사는 다음 첫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2그룹에 속한 이사는 두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3그룹에 속한 이사는 세번째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가진다.

제3조 (본 개정정관 시행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신분)
본 개정정관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 중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와 감사는 본 개정정관에 의하여 상근이사와 상근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임기를 계속한다.

제4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5조 (내규)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업무상 필요한 세칙이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99년 3월 26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년 9월 7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년 12월 28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년 3월 24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규정)
① 본 정관 개정은 제2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사업연도 종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는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회 총원의 2분의 1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규정)
제52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않고 당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은 이 회사의 상근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가지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부 칙 (2001년 3월 29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는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년 11월 12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년 2월 25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임 중인 사외이사의 임기)
정관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변경정관 시행일 전에 선임되어 재임 중인 각 사외이사의 임기는 그 선임 결의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2004년 3월 26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정관 제10조의2 제6항의 규정은 정관 변경 시행일 현재 부여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06년 3월 28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3월 26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0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년 3월 26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년 2월 13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2년 2월 13일에 선임된 이사의 임기)
정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2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2015년 정기주주총회 종료시에 만료된다.

부 칙 (2012년 3월 23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39조, 제48조의2, 제50조, 제52조, 제54조의 신설, 개정 규정 및 제52조의2 삭제된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의장의 임기)
제41조와 관련하여, 2012년 2월 14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의장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 칙 (2017 년 3월 24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년 3월 22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 삭제, 신설된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3월 20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년 3월 30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년 3월 28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년 3월 25일 시행)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제4항 및 제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독립이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6조,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48조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